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 감면대상 변경(안 제12조)
- 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다.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라. 수탁자의 관리운용 능력평가 신설(안 제16조)
- 마. 위탁 취소 사유 보완(안 제17조)
- 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0조 ~ 제25조)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담하는 비용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시설

이용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사용시간)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고,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재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프로그램
3.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실적, 전문성
4. 수탁자의 재정 능력
5. 운영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6.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같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갱신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수탁 대표자, 수탁자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위탁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8.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1.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제25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미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	
2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상모동)	
3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구미시 해평면 해평4길 12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제6조 관련)

시 설 명	휴관일	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	법정공휴일은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수영장	매주 일요일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매주 월요일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시간(제6조 관련)

시 설 명	평일	토, 일 공휴일	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09:00~21:00	09:00~18:00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11:00~20:00 (월요일 제외)	09:00~18:00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09:00~18:00	09:00~18:00	

시 설 명	평일	토요일,공휴일	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06:00~21:00	09:00~18:00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4]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 생활관 사용료

- 숙박형 프로그램 이용단체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1인1박)	식 비 (1박3식)	시설이용비 (1인1박)	수련활동비 (1인1박)	합 계	비 고
청소년 이하	4,000	12,000	2,500	2,000	20,500	당일 11:00 ~익일 10:00
일반인 (인솔자)	5,000	15,000			20,000	

※ 인솔자의 시설이용비 및 수련활동비 면제.

※ 숙박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일반단체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1인1박)	식 비 (1박3식)	시설이용비 (1인1박)	수련활동비 (1인1박)	합 계	비 고
청소년 이하	4,000	12,000	2,500		18,500	당일 11:00 ~익일 10:00
일반인	5,000	15,000	2,500		22,500	

※ 입소 전 협의된 시설만 이용 가능함.

※ 교육(수련활동, 워크샵, 세미나 등)을 목적으로 만 사용가능함.

- OT, MT, 야유회, 관광 등 유희·숙박 목적 사용 제한.

※ 단체기준 : 30명 이상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 반	
강 당	1회(2시간)	무료	30,000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체 육 관	1회(2시간)	무료	30,000	
명 료 관	1회(2시간)	무료	20,000	
강의실(대)	1회(2시간)	무료	20,000	
강의실(소)	1회(2시간)	무료	10,000	
음악연습실	1회(2시간)	무료		
댄스연습실	1회(2시간)	무료		
노래연습실	1회(2시간)	무료		
골프체험관	1회(2시간)	무료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비명		기 준	금 액	비 고
피아노		1회(2시간)	5,000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빔 프로젝트		1회(2시간)	10,000	
조명시설 (무대조명)	강 당	1회(2시간)	10,000	
	체 육 관	1회(2시간)	10,000	
음향시설		1회(2시간)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 · 난방	강 당	시간당	10,000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체 육 관	시간당	10,000	
	명 료 관	시간당	3,000	
	강 의 실	시간당	3,000	

□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이하	일반	
강좌(프로그램) 이용료	1명/1회	0 ~ 20,000	10,000 ~ 40,000	○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좌(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강좌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까지임.

※ 재료비는 강좌(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운영일	이용요금				비고
월~금(강습) 토·공휴일(자유이용)	월정기권	성 인	60,000		
		청 소 년	50,000		
		어린이/경로	42,000		
	1일 이용 (당일에 한함)	성 인	3,500		
		청 소 년	3,000		
		어린이/경로	2,500		
	1일 이용 (30명 이상 단체)	성 인	3,000		
		청 소 년	2,500		
		어린이/경로	2,000		

※ 월 회원중 10~55세까지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사용 가능일 중 3일을 공제한다.

<용어의 정의> 수영장에 한한다.

-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경 로 : 65세 이상인 자
- 단 체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

☐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강의실	1회(2시간)	20,000원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 시설 사용료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주차장 (야영장)	승용 13인승 미만 승합 1.5톤 미만화물	1대	1,000	체류 1박마다 500원 추가징수	
	13인승 이상 승합 1.5톤 이상화물	1대	1,500		
강당	평일	시간당	10,000	냉난방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포함	
	토·일·공휴일	시간당	11,000		
생활관	숙박비	청소년	1인/1박	4,000	당일 12:00 ~익일 12:00
		일반		5,000	
	식비	청소년	1인/1식	4,000	
		일반		5,000	

※ 야영장 사용과 관련, 전기·수도·쓰레기처리비, 텐트대여료 등
야영장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자체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수련활동비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프로그램 이용료	1명/1회	청소년 이하	30,000원 이내	○ 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단위행사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임.
		일반	50,000원 이내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5]

사용료의 환불기준(제11조 관련)

1. 수영장, 체육관, 수련활동 등 이용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전	전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개시일 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강당, 회의실, 숙박시설 등 대관료

구 분	환불신청	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전	전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개시일 3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2일 이전부터 개시일 전	총 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5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개시일이란, 사용이 개시되는 시각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생략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

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 12 생략

③ 생략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2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계		1,200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00,000원×6명×2회	1,2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계 강진선 (054-480-6572)

소관 실 · 과		가족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이 장 호
	담 당	이 영 도
	담 당 자	강 진 선 (480-6572)